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00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 박용갑·장철민·박정현

김영호 · 복기왕 · 조승래

소병훈 · 안태준 · 윤준병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.

그러나 2021년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12만 5,698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가구당 평균 18만 2,329원의 관리비를 미납했고,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총 14만 7,125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했으나, 현행법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지원할 뿐, 관리비 지원 근거가 없어 최소한의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
또 2022년 8월 기준 주거급여 지급 기준 대상 297만 가구 중 실제주거급여를 받은 가구는 160만 가구로, 자발적 미신청 가구인 35.3%를 제외해도, 미수급 가구가 7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

이에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'신청주의'에서 '발굴주의'로 전환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주거급여를 통해 관리비를 지원 근거를 신설함(안 제2조제1호, 제7조의2, 제8조의2 신설, 제10조제3항 신설,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,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·제2호·제5호 등).
- 나. 주거급여제도가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구축된 '사회보장정보시스템'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별 수급권자 및 수급자수,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, 단전, 단수, 단가스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, 제1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).
- 다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발굴조사 및 신청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굴체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수선유지비, 그 밖의 수급품"을 "수선유지비, 관리비, 그 밖의 수급품"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"할 것"을 "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"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"수급자의"를 "수급권자의"로, "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"를 "수급권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와 관리비"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관리비의 지급) ① 제2조제1호의 관리비(이하 "관리비"라 한다)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

- ② 관리비의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, 소득인정 액, 거주형태,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.
- ③ 관리비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

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관리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제2항제2호 중 "임차료"를 "임차료 또는 관리비"로, "차임(借賃) 을"을 "차임(借賃)이나 관리비를"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"을 "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"임차료 및 수선유지비"를 각각 "임차료,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(종전의 제5호) 중 "임차료 및 수선유지비"를 "임차료, 수선유지비 및 관

리비"로 한다.

- 5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별 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
- 6. 시·도 및 시·군·구별 수급권자 및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
 - 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 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
 -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
 - 다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 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
 - 라. 「전기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단전(전류제한을 포함한다), 「수도법」 제39조에 따른 단수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
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
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발굴조사 및 신청현황에 대한 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

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「긴급복 지지원법」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주거급여"란 「국민기초생	1
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2호	
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	
필요한 임차료, <u>수선유지비,</u>	수선유지비 <u>,</u>
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	관리비, 그 밖의 수급품
것을 말한다.	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
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	무)
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	
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	
•시행하여야 한다.	
1.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	1
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<u>할</u>	
<u>것</u>	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
	유지되도록 할 것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2(주거급여의 분리 지급)	제7조의2(주거급여의 분리 지급)
① <u>수급자의</u> 미혼자녀 중 19세	① <u>수급권자의</u>
이상 30세 미만인 자(이하 이	
조에서 "청년가구원"이라 한다)	

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 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 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와 관 있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-----수급권자와

리비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관리비의 지급) ① 제2 조제1호의 관리비(이하 "관리 비"라 한다)는 타인의 주택등 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 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 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 ② 관리비의 보장범위 및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, 소 득인정액, 거주형태, 관리비 부 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③ 관리비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 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10조(신청조사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- 제11조(확인조사) ① 특별자치시 제11 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 수 · 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 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(이하 "확 인조사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1. • 2. (생략) <신 설>
 - <u>3.</u> (생 략)
 - ② (생략)
- 주거급여의 중지) ① (생 략)
 -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제10조(신청조사)	1 •	2	(7	현	행 :	라
같음)						
			_	_	_	

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
관리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
청조사를 하는 경우 관리비의
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
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
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ll11조(확인조사) (1)	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
-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14조(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제14조(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) ① (현행과 같음)
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 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수급자가 지급받은 <u>임차료</u>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으로 <u>차임(借賃)을</u> 연체한 경 우
- ③ (생략)
- 제17조(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 7 산화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 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 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

1. (현행과 같음)
2 <u>임차료</u>
또는 관리비
賃)이나 관리비를
_
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
산화) ① (현행과 같음)
②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
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「사회
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
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
1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
보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
<u>하는 시스템</u>
③

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)
- 2. <u>임차료 및 수선유지비</u>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

3.·4. (생략) <신설>

<신 설>

,
1. 임차료, 수선유지비 및 관리
<u>ਸ]</u>
2. 임차료, 수선유지비 및 관리
비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5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
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
도"라 한다) 및 시・군・구별
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
<u>6. 시·도 및 시·군·구별 수</u>
급권자 및 수급자 중 다음 각
목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
<u>수급자 수</u>
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

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 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

-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 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 의 가구정보
- 다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』제2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 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 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
- 라. 「전기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단전(전류제한을 포 함한다), 「수도법」 제39 조에 따른 단수, 「도시가 스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
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
- <u>5.</u> 그 밖에 <u>임차료 및 수선유지</u> <u>7. ------임차료, 수선유지비</u> 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 및 관리비------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자료

④·⑤ (생 략) 제18조(지도·감독 등)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지도·감독 등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발굴조사 및 신청현황에 대한 조사를 분기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1 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「긴급 복지지원법」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 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.